공갈·특수협박·협박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해

[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. 7. 8. 2020고단715, 2020고단1413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1인

【검 사】오슬기(기소), 손성민, 백가영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최규일 외 2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4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.

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들로부터, 압수된 증 제11 내지 14, 21, 22, 24, 26, 27, 29호를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.

압수된 증 제28호(현금)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